

훈련사업별 FAQ (1)

경남

💡 (사업주) 유급휴가훈련 훈련 종료 후 한 달 이내 임금 지급 요청 → 4월에 훈련이 종료되면 4, 5, 6월 3개월치 임금대장을 첨부해야 하므로 3개월 후 임금이 지급되고 있음. 훈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

- ✓ 근로자에게 부당한 사례(훈련 종료 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여 지급)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로 **훈련종료월을 포함하여 전후 3개월의 임금대장 확인 필요**
* 4월 종료 후 3, 4, 5월의 임금대장 첨부로 지원금 수령 가능

경기

💡 (사업주) 높은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주훈련 진입 장벽이 높으므로 **완화 요청**

- ✓ 대리 출석 등 부정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**부정훈련 예방을 위해 자기부담 제도를 강화**(‘19.1월) 하였으며, 부정훈련 예방과 훈련 참여 내실화를 위해 **현행 제도 유지 필요**

경기동부

💡 (사업주)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중 ‘보건·의료’ 직종 포함 필요 → 요양 직종은 사업장 자체가 영세하고, 특히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개별 가정에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1개 기관 단위로 시간을 맞춰 자체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공동훈련 가능 직종에 ‘보건·의료’ 직종 포함 검토 요청

- ✓ 훈련과정 공급이 일부 직종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어, **경영·회계·사무, 보건·의료분야 등 5개 직종을 주 과목으로 편성 불가하도록 제한하였음** (훈련시간의 50%미만은 직종 제한 없이 혼합 편성 가능)

경북동부

💡 (컨소시엄) 채용예정자과정 미취업자의 경우 중복 수강 시 패널티가 없어 취업의지가 부족하므로 **중복 수강 제한에 대한 고려 필요** (*훈련수당만 받으면서 매년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 발생)

- ✓ 컨소시엄 운영 규정 및 규칙 상 **관련 내용이 현재는 부재**
- ✓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은 “반복수강에 대한 지원(향상 및 양성)은 동일 회계 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제한한다.”는 내용이 있으므로 **컨소시엄 운영 규정 및 규칙 향후 개정 시 반영되도록 검토**

부산, 경남

💡 (컨소시엄) 유급휴가훈련 실시 기간(필요일수)을 5일에서 3일로 단축 요청

- ✓ 유급휴가훈련 실시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**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개정 예정**(일자 미정) → **시행령 개정 공고 후 공단 사업지침에 적극 반영**
* **경상남도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실시 기간 단축 진행, 향후 대상지역 선정 관련 검토 예정**

경남

💡 (컨소시엄) 허브사업단 직무연수 교육이 권역별로 실시하는 **훈련내용이 다르므로** 균등하게 실시되었으면 함
- 예를 들어, 수요조사 관련 교육은 동남권 허브사업단에서 진행하지 않아 다른 허브사업단으로 이동하여야 하나, 접근성이 어려워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음

- ✓ **허브사업단과 업무협의를 통해 권역별 훈련내용 균등화 추진** → 각 허브사업단 별로 현재 나누어진 업무분장(직무연수 교육) 관련하여 요청한 내용과 같이 내년에 각 허브사업단 별로 직무연수 교육내용을 권역별 동일하고 균등하게 실시하도록 개선

훈련사업별 FAQ (2)

울산

- 💡 (자산맞)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→ 자산맞 공동훈련센터들의 연간 운영과정, 훈련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**지역 내 공동훈련센터 및 운영과정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**
- ☑️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2차 인력양성협의체(‘20.7.22.) 회의 시 자산맞 공동훈련센터의 온·오프라인 (뉴스레터, 버스 등) 홍보 내용 공유 완료
- ☑️ 울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동훈련센터 홍보 관련 협의 예정

광주

- 💡 (자산맞) 사업 성과평가 지표가 사업 초기에 공지되지 않고 사업연말에 공지되어 연간 목표 설정이 어려움 → **성과평가 지표 가안을 사업 초기에 제시해주고 사업 중순 즈음 확정된 성과지표를 공지해 주었으면 함**
- ☑️ 고용노동부,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‘21년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지표 가안을 2021년 1분기중 공유 예정

광주

- 💡 (자산맞) 훈련 참여 시 기업 측에 조달청 입찰 가산점 부여, 훈련 수료시 정부지원금 지원 등 일부 혜택이 주어지도록 제도 개선 희망
- ☑️ 지역·산업 맞춤형 훈련을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소속 직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외에 추가적인 정부지원금 등의 지원은 불가

서울남부

- 💡 (학습조) 학습조직화 활동 시간 변경 시마다 공단에 통지해야하는 프로세스가 번거로움 → 일정 변경내역을 학습 일지의 비교란에 적는 방식 등으로 개선하여 간소화 필요
- ☑️ 참여기업 행정 부담을 줄이고,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간소화 하겠음

울산

- 💡 (학습조) 외부전문가 지원금 1일 한도 증대 요청 → 규정상 외부전문가 정부지원금 총 한도는 300만원이나 1일 지원금 한도가 50만원(1일 3시간 이상 수행 원칙)으로 정해져 있어, 사업장이 지방에 위치한 경우 정해진 1일 지원금 내에서 실질적인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- ☑️ 외부전문가 지원 유형의 경우, 기업 조직문화 진단 등 컨설팅(코칭)이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(6~7회)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- ☑️ 외부전문가 1일 비용한도는 50만원으로, 1회 정부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, 기업자율부담금을 추가할 경우에 한해 수당 한도 조정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